

## ▣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

주요리스크	대응방안
<p><b>안전보건 정책 및 규제 강화</b>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 추진이 요구됩니다.</p>	<p>2022년 전사 안전보건관리 총괄·관리와 선제적인 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실을 신설했습니다. 안전보건운영팀과 예방진단팀으로 구성된 '안전보건실'은 중대산업재해발생 원인을 발견하고, 전사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</p>
<p><b>종사자 위협 요인 상존</b> 작업환경의 변화, 설비의 새로운 설치, 근로자의 교체 등 종사자를 위협하는 유해·위험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.</p>	<p>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여 종사자를 위협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근원적, 공학적, 절차적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</p>
<p><b>다양한 도급·용역·위탁업체</b> 기존 사업의 확장, 신규 설비 또는 장치의 설치,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으로 다양한 업체와 도급·용역·위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한 협력업체의 선정이 필요합니다.</p>	<p>도급·용역·위탁 시 적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, 실제 업무 또는 공사 시 안전보건활동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</p>
<p><b>급변하는 안전보건 여건의 대처 능력 요구</b> 신규입사자 사업장 배치, 고령근로자 증가, 새로운 설비·장치 도입에 의한 전문 지식 요구 등 안전보건 환경의 취약성이 우려됩니다.</p>	<p>행정 위주의 안전보건 업무를 탈피하여 사무공간, 생산 및 작업공간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'스마트 안전보건관리체계'에 접근 가능토록 전산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신규 채용자, 고령근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맞춤형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합니다.</p>